



등기번호	066080	
등록번호	110111-0660806	
상 호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HEERIM ARCHITECTS & PLANNERS Co., Ltd.)	2016.11.11 변경 2016.11.11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상일동)	2015.01.06 변경 2015.01.07 등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eerim.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2010.03.30 변경 2011.04.07 등기
------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2008.02.26 변경 2008.02.26 등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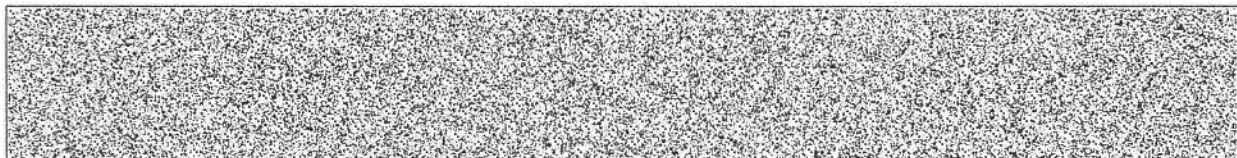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주	2008.01.22 변경 2008.02.26 등기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3,922,475 주	금 6,961,237,500 원	2010.03.30 변경
보통주식	13,922,475 주		2010.04.12 등기

목 적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및 감리업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 설계감리, 설비감리업	<1996.01.22 추가	1996.01.23	등기>
3. 소방시설 설계및 공사 감리업	<1996.01.22 추가	1996.01.23	등기>
5.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 및 공사감리 설계감리업	<1997.02.17 추가	1997.02.22	등기>
6. 건설기술 관리용역업	<1999.09.06 추가	1999.09.18	등기>
7. 실내건축설계, 감리 및 공사업	<1999.09.06 추가	1999.09.18	등기>
8.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용역 또는 수탁사업	<1999.09.06 추가	1999.09.18	등기>
9. 위의 각항에 관련되는 사업의 국내외 기술 제휴 및 합작투자	<1999.09.06 추가	1999.09.18	등기>
3. 부동산임대업 및 컨설팅 개발 사업	<2001.03.23 추가	2001.04.03	등기>
10. 해외 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 및 전문건설업	<2001.03.23 추가	2001.04.03	등기>
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2004.03.26 추가	2004.04.08	등기>
12. 도서출판업	<2007.03.29 추가	2007.04.11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0002400900890162610711101206101B9DABFEBFC1F819670917 1 발행일:2017/12/19 발급확인번호 0801-AASA-KOLR



등기번호	06608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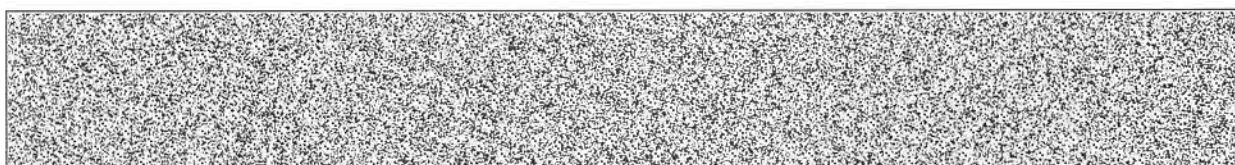
13. 부동산개발업	<2016.03.29 추가 2016.04.08 등기>
14.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6.03.29 추가 2016.04.08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정영균 620726-*****							
1998년 11월 28일	취임	1998년 12월 11일	등기				
2001년 11월 28일	퇴임	2001년 12월 22일	등기				
2001년 12월 11일	취임	2001년 12월 22일	등기				
2004년 03월 26일	사임	2004년 04월 08일	등기				
2004년 03월 26일	취임	2004년 04월 08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4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정영균 620726-*****							
2009년 03월 29일	중임	2009년 04월 08일	등기				
2011년 03월 29일	중임	2011년 04월 07일	등기				
2013년 03월 29일	중임	2013년 04월 11일	등기				
2015년 03월 29일	중임	2015년 04월 09일	등기				
2017년 03월 29일	중임	2017년 04월 06일	등기				
이사 이목운 531006-*****							
2001년 03월 23일	취임	2001년 04월 03일	등기				
2004년 03월 26일	중임	2004년 04월 08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4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이목운 531006-*****							
2009년 03월 29일	중임	2009년 04월 08일	등기				
2011년 03월 29일	중임	2011년 04월 07일	등기				
2013년 03월 29일	중임	2013년 04월 11일	등기				
2015년 03월 29일	중임	2015년 04월 09일	등기				
2017년 03월 29일	중임	2017년 04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정영균 62072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1 정든마을 604동 1002호							
2001년 03월 23일	취임	2001년 04월 03일	등기				
2001년 11월 28일	퇴임	2001년 12월 22일	등기				
2001년 12월 11일	취임	2001년 12월 22일	등기				
2004년 03월 26일	사임	2004년 04월 08일	등기				
2004년 03월 26일	취임	2004년 04월 08일	등기				
2007년 03월 29일	중임	2007년 04월 11일	등기				
대표이사 정영균 6207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610-501							
2004년 07월 14일	주소변경	2008년 12월 12일	등기				
2009년 03월 29일	중임	2009년 04월 08일	등기				
2011년 03월 29일	중임	2011년 04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정영균 6207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10동 501호(정자동, 파크뷰)							
2011년 10월 31일	도로명주소	2012년 10월 23일	등기				
2013년 03월 29일	중임	2013년 04월 11일	등기				
2015년 03월 29일	중임	2015년 04월 09일	등기				
2017년 03월 29일	중임	2017년 04월 06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0801-AASA-KOLR

00002400900890162610711101206101B9DABFEB1F819670917 1 발행일:2017/12/19

- 2/6 -



등기번호	066080
------	--------

대표이사 이목운 53100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 사랑마을 1604-1502	
2008년 03월 28일 취임	2008년 04월 10일 등기
2009년 03월 29일 중임	2009년 04월 08일 등기
2011년 03월 29일 중임	2011년 04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이목운 53100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50, 1604동 1502호(상동, 사랑마을)	
2011년 10월 31일 도로명주소	2012년 10월 23일 등기
2013년 03월 29일 중임	2013년 04월 11일 등기
2015년 03월 29일 중임	2015년 04월 09일 등기
2017년 03월 29일 중임	2017년 04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황의표 640220-*****	
2012년 03월 30일 취임	2012년 04월 10일 등기
2014년 03월 30일 중임	2014년 04월 11일 등기
2016년 03월 30일 중임	2016년 04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황의표 6402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44동 802호(잠실동, 트리지움)	
2012년 05월 09일 취임	2012년 05월 09일 등기
2014년 03월 30일 중임	2014년 04월 11일 등기
2016년 03월 30일 중임	2016년 04월 08일 등기
사외이사 조우현 670326-*****	
2015년 03월 29일 취임	2015년 04월 09일 등기
2017년 03월 29일 중임	2017년 04월 06일 등기
감사 정재영 520307-*****	
2017년 03월 24일 취임	2017년 04월 06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4년 12월 03일 변경 2014년 12월 12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4회 사모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90억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90억원권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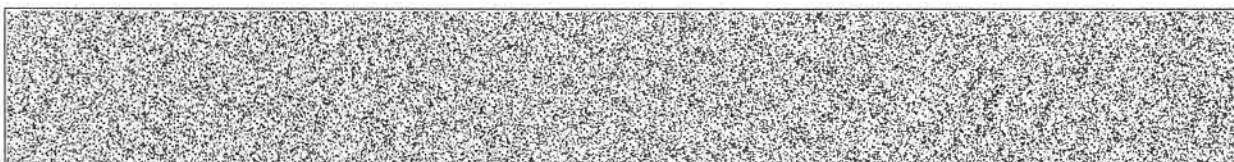
액면금액 금 90억원 전부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비율 : 발행액면 금액의 100%

(2) 초기전환가격 : 5,104원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에 의한 기준 가격)



등기번호	066080
------	--------

(3)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4)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times 1\text{주당 발행가액}]\} / [\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나)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본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가)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본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times 1\text{주당 발행가액} / \text{시가}]]\} / [\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다) 위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전환가격을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보며, 본호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초기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발행 1년후(2018년 6월 30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2020년 6월 23일)까지
 2017년 06월 30일 발행 2017년 06월 30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위 (1)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6년 03월 29일 변경 2016년 04월 08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



등기번호	066080
------	--------

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2016년 03월 29일 변경 2016년 04월 08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위 (1)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6년 03월 29일 변경 2016년 04월 08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6년 03월 29일 변경 2016년 04월 08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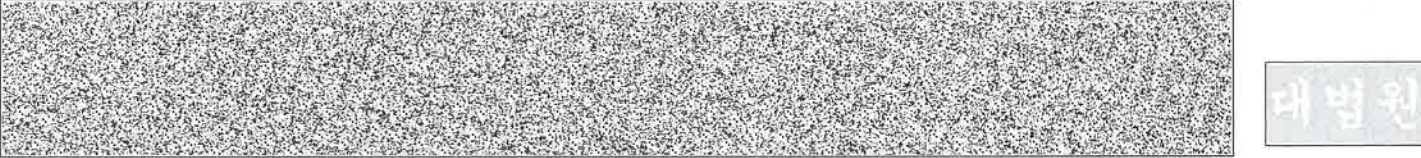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6년 03월 29일 변경 2016년 04월 08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1989년 11월 28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용지로 부터이기
 1995년 01월 03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등기번호	066080
------	--------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등기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7년 12월 19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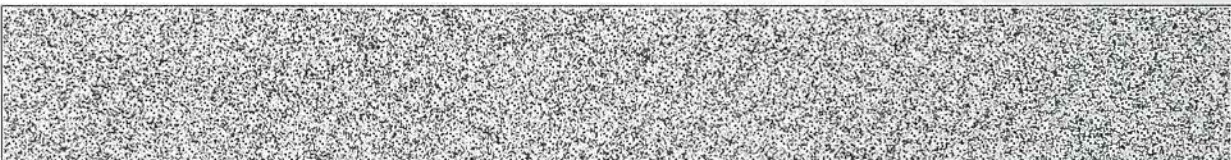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0801-AASA-KOLR

00002400900890162610711101206101B9DABFEB1F819670917 1 발행일:2017/12/19

- 6/6 -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Republic of Korea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Computer Operation Officer**

3. acting in the capacity of **Computer Operation Officer**

4. bears the seal/stamp of **Central Office of Registered Information Management, Court Administration**

Certified

5. at **Seoul**

6. **19/12/2017**

7.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8. No. **XXA2017J7K2838**

9. Seal/ stamp

10. Signature



Kimbyoung Ho

Kim Byoung Ho